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62,879,371	16,886,381
일반회계	556,911,099	16,707,333
특별회계	5,968,272	179,048
기타특별회계	5,968,272	179,048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556,527	106,696
주택사업특별회계	70,339	2,11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41,653	31,250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70,855	2,126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064,116	31,923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64,782	4,943

제 2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37,22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수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